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공고 제2026 - 19 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속기 보조)를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8월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의회의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사무원(속기보조)	3명	북구의회 회의록 작성 및 정리	의회사무국(의사팀)

2. 근무조건

채용 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보수	근무지
사무원(속기보조)	채용시 ~ '26. 12. 31.(목)	1일 8시간 주5일 (9:00 ~ 18:00)	일일노임 : 106,424원 ※ 2026년도 북구생활임금액	의회사무국(의사팀)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연 령 : 18세 이상

○ 자격요건

구 분	자격기준
사무원(속기보조)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소지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가점 사항

※ 중복 가점 불가

구 분		부가점수
사회형평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면접 전형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채용 절차

구 분	일 정	비 고
채 용 공 고 기 간	2026. 8. 28.(금) ~ 2026. 9. 7.(월)	홈 페 이 지 공 고
원 서 접 수 기 간	2026. 9. 1.(화) ~ 2026. 9. 7.(월)	방 문 접 수 및 우 편 접 수
서 류 전 형	2026. 9. 9.(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2026. 9. 10.(목)	홈 페 이 지 공 고 (합격자 문자 발송)
면 접 전 형	2026. 9. 14.(월)	시간·장소 추후 통지 (신 분 증 지 참)
최 종 합 격 자 발 표 일	2026. 9. 18.(금)	홈 페 이 지 공 고 (합격자 문자 발송)
채 용 등 록	2026. 9. 22.(화)	본 인 방 문 (신 분 증 지 참)

※ 전형 일정은 증빙서류 검증 소요시간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된 일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예정)

5.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원서접수 기간 : 2026. 9 1(화) ~ 2026. 9. 7.(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우편도착분(방문접수 포함)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접수시 우편물 도착여부 확인 요망

○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공통사항 + 가점 대상자(해당시))

공통사항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근무경력 인정은 제출된 경력증명서의 기재사항만 인정되며 근무기간, 담당업무, 증명서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인정된 경력사항은 면접시 「전문성 분야」 중 실무경력 평가 자료로 활용

가점·우선채용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독립유공자법」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이번 채용시 가점대상자는 아니나 동점자 발생시 우선 채용 대상자임

· 사회형평 가점 대상자
- 장애인/저소득층/한부모가족 : 해당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나. 면접전형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지참

다. 최종합격자

-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6. 채용 방법 : 제한경쟁채용

□ 서류전형(1차) : 응시 자격요건 적격 여부 심사

□ 면접전형(2차)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채용분야	내 용
사무원 (속기보조)	▶ **평정요소***를 탁월(20~19점), 우수(18~17점), 보통(16~15점), 미흡(14~13점), 부진(12점) 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① 속기사에 대한 전문성 - 전공에 필요한 전문지식(20%) ② 속기사에 대한 전문성 - 교양지식 및 실무경력(20%) ③ 속기사에 대한 자세·직업관·사명감 등(20%) ④ 북구의회에 대한 관심(20%) ⑤ 북구의회 직원으로서 품위 및 책임감 등(20%)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가 고득점인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미흡" 또는 "부진"**으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 요소를 "미흡" 또는 "부진"**으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발생시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면접 평정요소 중 ①, ② 항목의 합산점수 고득점자 → 자격증 상위급수]** 순으로 결정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발표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 (운영기한)	비고
사무원(속기보조)	3명	1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이내)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시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작성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른 경우 전형 결과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기재로 불합격 처리 또는 채용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서류 발급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 처리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전형 심사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이 경우 당초 원서 접수 기간 중 원서를 접수한 사람은 별도 서류제출 없이 재공고에 따른 원서를 접수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조회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의회 홈페이지 공지 및 응시자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채용담당자(☎ 062-410-8506)에게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서식 1〉 응시원서 1부
2. 〈서식 2〉 이력서 1부
3.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
4. 〈서식 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끝.